



# 심사보고서

|      |                               |
|------|-------------------------------|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번호 | 제10호                          |
| 심사일자 | 2026. 9. 2.                   |



위원장 박인섭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10 |
|------|----|

2026년 9월 2일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8. 14. 최상진 의원 외 14명
- 나. 회부일자: 2026. 8. 18.
- 다. 상정일자: 2026. 9. 2. 제3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 요지 (최상진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상 구청장 비서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시되지 않아 비서실 관련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등 의회 견제 기능의 책임소재와 소관이 불명확한 실정임.
- 이로 인해 비서실 업무가 총무과 등을 통해 간접 점검되는 한계가 있어, 비서실 관련 사무의 상시적·체계적 점검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구청장 보좌 및 집행부 소통을 담당하는 비서실의 업무 성격과 행정 라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구청장 비서실을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실효성 있게 다잡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구청장 비서실 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2호라목)

##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관계법령: 별첨
  -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혜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최상진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0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송파구청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임.

○ 「지방자치법」 제64조에서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에서 위원회가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비서실 관련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을 실질화하려는 내용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등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려는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채승우 위원

○ 지난 제33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보류된 바 있는데, 보류 사유 및 검토 내용은?

**【답변】 최상진 의원**

- 지난 심사 시, 제9대 의회 의원님들이 제10대 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 보류되었음.

**【질의】 위정희 위원**

- 본 조례 개정 후, 함께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최상진 의원**

- 추가로 조례 개정할 사항은 없음.

**【질의】 박성희 위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답변】 최상진 의원**

-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금천구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시 및 경기도 조례에서도 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당부말씀】 박인섭 위원장**

-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을 특정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본 개정사항은 의정활동의 범위를 새롭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조례상 명확하지 않았던 소관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원활한 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5. 심사결과: 원안가결**